#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제48호

제출연월일 2006. 8. 21. 제 출 자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 운용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된 조항 삭제(안 제5조· 제6조 및 제8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신ㆍ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2006.7.19~8.10)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제4조제1항중 "각호"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회 운영비 지원

제5조 · 제6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 ① 기금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颜 아 개 정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제4조 (----)① --- 각호의 어느 하나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설> 4. 체육회 운영비 지원 4.(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삭제>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금으로 예 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 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매 회| <삭제> 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삭제>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 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개 혂 행 정 아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 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 제9조(준용) ① 기금관리 및 결산 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 하여는 「사천시 재무회계 규칙」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을 준용한다.

# 관 런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 제133條 (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
  - ②第1項의 財産의 보유,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 例로 정한다.
  - ③第1項에서 "財産"이라 함은 現金외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 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 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 를 발행할 수 있다.
- ④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 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58호)

- 제8조(기준경비) ①기준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수혜계층이 넓고 이해관계가 많은 경비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 한다.
  -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 2. 업무추진비
    - 3. 사회단체보조금
  - 4.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내지 별표 4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에 지원하는 운영비